

협 회 이 모 저 모

■ 제33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02. 1. 10(목) 07:30~09:00

-장소 : 본회(14층) 대회의실

1) 임원 보선

병원장 변경에 따라 후임 병원장을 이사로 보선
키로 함

변경 전	변경 후
부회장 최영길(경희대의료원장)	이사 유명철(경희대의료원장)
이사 윤충(경희대병원장)	이사 김승보(경희대병원장)

2) 종합병원, 도매상 경우 약품공급 의무화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종합병원 의약품거래시 도매상 경우 의무화’
를 폐지키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음”을 밝힘. 이
에 따라 현재 종합병원의 의약품거래시 도매상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제약사와 중
합병원간 직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3) 공동시설세 중과세 계획 철회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서 공동시
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에 4층
미만 개인병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계획이었으
나 본회가 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건의한 결과 동

과세계획을 철회함

4)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건의

사립대학교직원도 국공립대와의 형평성 및 복지
등을 고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
을 건의함

5)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여부 의견 제출

산재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하고 개선방안으로 산재도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
급여비용계약을 도입할 것을 건의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 개정 · 고시

- 관련근거 : 대통령령 17476호,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 내용 : 25,000원을 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
담액을 달리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의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을 조정하며 질병군별
(DRG) 포괄수가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 고시

- 관련근거 : 노동부 고시 제2001-70호
- 주요내용 : MRI 촬영범위 확대, MRI 판독료 수수료 신설, 휴업급여청구수수료 항목 삭제 등

■ 제3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02. 1. 17(목) 07:30~09:00
- 장소 : 본회(13층) 소회의실

1) 병원활성화 대책 발표

복지부는 중소종합병원의 의사구인난과 함께 외래환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회건의와 병원경영 실태조사를 토대로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활성화대책에 의하면 30병상이하 중소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이 9개에서 7개로 완화되고 모든 종합병원내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과 요양병동 운영등도 가능해지게 됨. 또한, 규모는 병원급이지만 의료기술은 대학병원급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체도를 도입하게 되며, 개방형병원제도 활성화될 계획임

■ 정책위원회

- 일시 : 2002. 1. 23(수) 07:30~08:40
- 장소 : 본회(13층) 소회의실

1) 본회 보험용의약품 공정경쟁규약 개정 대책

이미 개정 통보된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가운데 선진의학기술의 습득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학술 목적의 학회참가 지원을 위하여 학교, 의료기관 등을 통한 학회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함



■ 제3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 일시 : 2002. 1. 24(목) 12:00~14:00
- 장소 : 본회(14층) 대회의실

1) 상임이사 위촉

· 관련근거 : 정관제27조(회무보좌) “회장은 회무집행에 보좌를 얻기 위하여 이사중에서 2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지정된 업무를 관장케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법제위원장 홍창기 (서울중앙병원장)	부회장 홍창기 (서울중앙병원장)
이사유명철 (경희대의료원장)	법제이사 유명철 (경희대의료원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병원 범위 조정에 관한 건의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체계하에서 비영리법인 병원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재유권해석을 내려줄 것과,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근로자 4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4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예탁 관련 건의

결과

본회의 진료비 체불 개선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금년초 과년도 체불진료비 전액을 교부함과 동시에 2002년부터는 급여비 체불 일소를 위해 지역별, 의료기관별 급여지급 상황을 정기점검 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중임을 회신함

4)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의견 제출

자보 진료수가기준으로 선택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며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업무범위를 일탈한 사항이고 선택진료비 폐지를 통한 피보험자 보험료 인하 주장은 교통사고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건 교부에 제출함

■제33차 운영위원회

-일시: 2002. 1. 31(목) 12:00~13:30

-장소: 본회(14층) 대회의실

1) 산업자원부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신청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본회 및 병원(16) 및 IT사업자(8)를 중심으로 병원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사업단 발족식을 지난해 11,22일 가졌으며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함

2) 10개 병원 기소관련 병원장 회의

서울지방법원이 임의비급여와 관련 10개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해당 병원에는 불복하여 각각 항소키로 하고, 전체 병원계 차원에서 본회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대처키로 함

■제38차 상임이사회

-일시: 2002. 2. 7(목) 07:30~09:00

-장소: 본회(14층) 대회의실

1)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방문

본회 회장단이 1,28일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방문, 병원경영난을 설명하고 △외래환자본인부담금 조정 △의료기관 증별가산율 개선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선택진료 개선 등을 건의함

2) 10개병원 공판 관련 사항

10개병원 공판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당시 병원장을 형사범으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병원계 견해를 언론 및 관계요소에 전하고 선처를 호소함

3)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위원구성 관련 성명서 발표

본회등 의약계대표는 공익대표 위원 인선과정과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약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차 위원회 참여거부 등의 입장을 밝힘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본회 방문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7일 오후 대한병원 협회를 방문 라석찬 회장을 비롯한 병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빠른시일내에 병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 장관은 또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와 병원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함

■제3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일시 : 2002. 2. 21(목) 12:00~13:15

-장소 : 본회(14층) 대회의실

1) 본회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재건의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본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요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에 대한 공익기금제공, 해외학회 참가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본회에 요청함에 따라 제약사지원 해외학회연수참가지원비 수입 지출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회원병원은 집행실적을 본회 공정경쟁협의회를 통해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약 개정안을 수정해 공정위에 제출

2) WTO대책에 관한 사항

Request List 작성을 위해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와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각종 규제를 집중 조사해야 함. 병원계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Target을 정해야 할 것임. 영리법인 허용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3) 진료비지급관련 제도개선 요청

진료비지급관련 서면청구기관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EDI청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심사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함

4) 자보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한 심사지침' 관련

사항

“의료기관이 자보진료수가 청구전에 환자동의 없이 환자의 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보험사업자 등에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에 저촉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회신 및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한 심사지침’ 철회를 요청함 2002